

무배당 TheClassic달러경영인정기보험
(저해약환급금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heClassic달러경영인정기보험(저해약환급금형)

1. 보험종목의 명칭

구분	보험종목의 명칭
일반가입형	무배당 TheClassic달러경영인정기보험(저해약환급금형)
간편가입형	무배당 간편가입 TheClassic달러경영인정기보험(저해약환급금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기본보험기간

유형	가입나이 범위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일반가입형	90	세	90	세	20	70	24	70
간편가입형	90	세	90	세	30	75	30	75

나. 플러스보험기간

플러스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9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5년	일시납	일시납

※ 「18. 기타. 가. 플러스보험기간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별도의 의무가입 내용이 없습니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5. 기준통화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에 사용되는 통화는 미(美)합중국통화로 하며, 그 단위는 “달러” 로 표기합니다.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

이 계약에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을 부가하고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하여 납입하는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중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원화고정납입보험료 자동이체일을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 원화고정납입보험료에 준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①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의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 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1회 납입 가능한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선납할 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 로 계산합니다.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체결시점과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합니다.

11.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에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을 부가하여 원화고정납입옵션과 함께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화고정납입옵션과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은 동시부가옵션으로 동시 신청 및 동시 해지만 가능합니다.) 원화환산보험료가 원화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따라 그 초과된 금액은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자동으로 중도인출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고정납초과보험료 자동인출 옵션에 따른 중도인출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화로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적용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바.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기납인 계약
- ② 보험계약대출 신청 당시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 ③ 보험계약대출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75세 이하인 계약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15.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일 직후의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②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 마지막 날까지, 16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①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 및 ‘나’ 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6.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저해약환급금형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전까지는 해약환급금이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유해약환급금형”이라 합니다.) 대비 적은 대신, 유해약환급금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이후부터는 유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이 같습니다.

나. “가” 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다. 저해약환급금형의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과기간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3년 이전	0%
계약일 이후 3년 ~ 5년 이전	50%
계약일 이후 5년 ~ “납입기간” 이전 (경과월수가 60개월이 지난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납입기간” 까지)	95%
“납입기간” 경과 이후 ~	100%

【해약환급금 지급비율 예시】
2025년 1월 1일 계약, 50세 가입, 90세 보험기간, 90세 납입기간, 월납

기준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
계약일 이후 3년 이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0%
계약일 이후 3년 ~ 5년 이전	2028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0%
계약일 이후 5년 ~ “납입기간” 이전 (경과월수가 60개월이 지난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납입기간” 까지)	2030년 1월 1일부터 2064년 12월 31일까지 95%
“납입기간” 경과 이후 ~	2065년 1월 1일 이후 100%

라. 회사는 저해약환급금형 및 유해약환급금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마. 회사는 저해약환급금형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3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바. 이 계약의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은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사.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가’ 의 해약환급금에 ‘바’ 의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17.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가.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집니다.
- 다.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18. 기타

가. 플러스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자적립액(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합산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플러스보험기간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기본보험기간이란 피보험자의 9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②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기간은 5년이며, 보장개시일은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③ 플러스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 만료 시점의 계약자적립액(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원화고정납입용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합산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나. 이 상품의 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①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2호)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하며, 간소화된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참조)을 받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④ ③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 ⑤ 간편심사상품의 청약 시,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청약시점 직전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보험기간 1년 이하인 단기보험 제외)을 가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체 여부 재심사를 통해 일반가입형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동일한 담보의 일반가입형 상품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연금전환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하 “연금전환”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연금전환은 주보험을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④ 연금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⑤ 연금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달러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① 이 보험의 달러연금전환은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하 “달러연금전환”은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보험을 달러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달러연금전환은 주보험을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④ 달러연금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이 10,000달러 이상인 계약
- ⑤ 달러연금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종신전환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을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보험나이 및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 ③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한 종신보험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
 - 전환 전 계약을 전부 해지한 경우

바.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회사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이하 “조기 계약전환 옵션”이라 합니다)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계약전환 옵션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계약(기본보험료를 36회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①의 회사에서 정한 사유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기 계약전환 옵션을 신청할 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2.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입·퇴원확인서
 3. 계약체결 당시 대표이사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4. 계약체결 당시 최대주주였던 직위가 전환신청 당시 변경된 경우 : 주주명부 및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 ③ 계약자가 조기 계약전환 옵션의 실행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 이 계약의 잔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해지한 후 이 계약을 회사가 정한 전환상품으로 전환합니다.
- ④ 조기 계약전환 옵션에 따라 계약이 전환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환된 상품의 약관 및 기초서류를 따릅니다.
- ⑤ 다만, ① 내지 ④에 의하여 조기 계약전환을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할 당시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⑥ ①의 회사에서 정한 전환상품이라 함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말합니다.

- 사.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적용에 관한 사항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은 주계약에 부가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자. 약관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합니다.
- 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험의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해당 법인에서 재직중인 "CEO(최고 경영자), 등기임원"으로 한다.
- 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간편심사 관련]

1.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일반심사보험은 아래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비교(예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심사보험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 아래는 보험료 비교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일반심사보험으로는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분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계약 승낙 여부	일반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0세	000 달러	000 달러	40세	000 달러	000 달러
	50세	000 달러	000 달러	50세	000 달러	000 달러
	60세	000 달러	000 달러	60세	000 달러	000 달러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 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주) 1.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옅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님에게 설명하고, 이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으)로부터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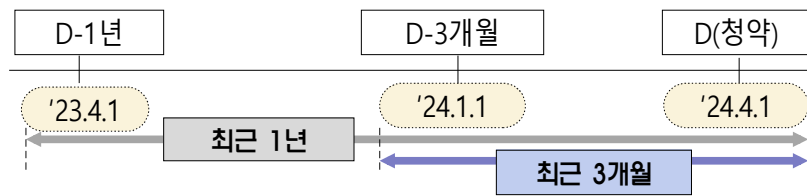
(별첨 제2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6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이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2,5년 이내)’는 청약일의 3개월 전일(2,5년 전일)부터 청약일 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건강 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입원 필요 소견 ② 수술 필요 소견 ③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④ 질병확정진단 ⑤ 질병의심소견

※ 필요소견 및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 직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업 직장명(근무처/소속부서)

취급업무(구체적으로 하는 일)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5.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피보험자: , / 배우자: ,)

① 승용차(영업용) ② 승용차(자가용) ③ 승합차(영업용) ④ 승합차(자가용) ⑤ 화물차(영업용)

⑥ 화물차(자가용) ⑦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영업용) ⑧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자가용)

⑨ 건설기계 ⑩ 농기계 ⑪ 기타()

6.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 알릴 의무가 없는 상품입니다.)

7. 월평균소득(계약자 기준) : ()만원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인)

피보험자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성명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별첨 제3호)

“저해약환급금형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납입보험료 비교 예시표						(단위: 달러)			
부가한 계약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저해약환급금형	유해약환급금형				
* 위의 예시표는 “무해약환급금형 또는 저해약환급금형” 상품과 유해약환급금형상품의 보험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예시한 것으로, 상품별 세부적인 가입조건(납입기간, 가입금액 등)은 상기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의 유해약환급금형은 해지율을 제외한 보험료 산출 기초율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말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유해약환급금형은 저해약환급금형의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비교를 위한 상품으로 별도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의 해약환급률 비교									
기준	경과기간 (2025년1월1일계약, 50세 가입, 90세 보험기간, 90세 납입기간, 월납)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지급되는 비율				
계약일 이후 3년 이전	2025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0%				
계약일 이후 3년~5년 이전	2028년1월1일부터 2029년12월31일까지				50%				
계약일 이후 5년경과 이후	2030년1월1일이후				95%				
* 상기 지급비율은 예시이며, 실제 가입하신 계약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비교								(단위: 달러)	
경과	저해약환급금형 ^{주1)}				유해약환급금형 ^{주2)}				
기간	보험료누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보험료누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									
주1) 위의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내용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위의 해약환급금은 비교를 위해 가입당시 내용을 유해약환급금형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으로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은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해약환급금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유해약환급금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저해약환급금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아래 얇고 크게 밑줄친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가입하신 저해약/무해약 환급금형 상품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이 없거나 적으며 , 저축목적 으로 가입 할 경우에 다른상품 을 선택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보험계약자 ○○○ (서명)